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1/13	관리 부서	사무처

제1장 재난 안전 관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학교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라 함은 학생, 교직원, 학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태풍·홍수·호우(호우)·폭풍·해일(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나. 화재·붕괴·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한다.
 - 다. 에너지·통신·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학생, 교직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의 총괄은 총장으로 하며, 종합상황반, 시설복구반, 자원동원반, 연락소집반 등으로 운영한다.

또한 재난 안전책임관의 "정"은 사무처장 "부"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재난 안전 책임관의 직무)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6. 안전관리 계획서 및 해외여행 안전 관리지침 작성
7. 그 밖에 재난의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2/13	관리 부서	사무처

제5조 (재난 안전 교육)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재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 (재난의 신고 및 대책 수립)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안전책임관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안전책임관은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사고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안전책임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응급 대책) 안전책임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조치·후보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를 행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시설물 관리

제1절 시설물 유지관리

제9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시설물은(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은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 장애인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3/13	관리 부서	사무처

제10조(정의) 이 규정의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과 운동장, 조경물,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및 기타 본 설치물 내·외부에 시설한 각종 구조물을 말한다.
2. “건물”이라 함은 본교의 부지 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쓰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한다.
3.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하며,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선로를 말하는 것으로써 책임 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즉 전기사용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4.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 공동구내의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를 말한다.
5. “기계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 공동구에 설치된 냉·난방, 위생, 가스(집합장치 및 배관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 한한다) 자동제어설비를 말한다.
6. “소방설비”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7. “관리”라 함은 위 제1~6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따른 유지·보존하는 제반 행위일체를 말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는 일반 관리업무 및 유지·보수업무로 구분한다.

제11조(대상 및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관리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관리 시설물
2. 본관, 제1강의관, 제2강의관, 제3강의관, 간호실습관, 글도담관과 부속 및 부설기관 관리 시설물
3. 기타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운동장

제12조(업무관장) ① 교내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는 사무처장이 총괄관리 책임자가 되어 관장한다.

- ② 각 건물의 관리감독은 총무팀 팀장이 하며, 총무업무담당 과장, 대리, 주임, 기사가 보조하며 상위직급자의 지시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시설물의 일반적인 유지·보수 등의 각종 업무처리는 본 대학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 ④ 각 건물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보안을 위해 소속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실별 정,부 관리책임자는 [별표1]과 같이 지정 운용한다.

	<h2 style="margin: 0;">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4/13	관리 부서	사무처

제13조(시설물 관리, 유지·보수 계획 수립) ① 모든 시설은 교과과정 및 복지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관리 주관부서는 매년 하반기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긴급히 조치를 취해 유지 및 보수를 할 수 있다.

③ 당해년도 구축된 시설물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 및 기자재 심의 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심의 요청한다. 단,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 점검) ① 시설물 점검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수시 점검은 관리책임자의 지시 하에 관리기사가 실시한다.

② 교과과정에 사용되는 강의실, 세미나실 등은 학기중에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시설보수) ① 시설물 보수사항을 그 규모에 따라 경미한 보수, 대규모 개보수로 구분하며 시설물 사용 중 노후 또는 훼손으로 교체 및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무처 총무팀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영선업무은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한다.

③ 대규모 개보수 업무는 기안을 작성하여 요청한다.

제16조(열쇠의 관리) ① 각 실의 열쇠는 2개를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는 비상용으로 경비실에 비치하고, 1개는 각 실의 교직원에게 지급하여 소지케 한다.

② 각 실의 열쇠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열쇠 대여로 인한 모든 사고는 해당 각 실의 장이 책임져야 한다.

③ 열쇠의 관리 소홀로 분실 및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무팀에게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시설물 안전관리

제17조(목적) 건물내부의 용도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사용에 있어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h2 style="margin: 0;">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5/13	관리 부서	사무처

제18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행정실과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조치업무에 적용한다.

제19조(특정 시설물 관리자 지정) 특정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는 각 시설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① 소방, 전기, 냉·난방, 및 GAS등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선임한 법정자격자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정시설물 보수 및 공사는 각 분야별 법정자격 및 인증자격자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여야하며 시설은 법정 기술자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일반 시설물의 보수 및 공사는 각 분야별 자격증 또는 인증자격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담당 및 책임자 선임) 안전관리담당 책임자는 각 실별 정,부 관리책임자가 담당한다.

제21조(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2조(비상연락망 구축) 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시설물 내부에 부착 한다.

- 1. 실별 정,부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2. 화재 및 인명피해 시 연락처
- 3. 기타 사고 시 연락처

제23조(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 1.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통합교육실시 : 교육주관 - 사무처 총무팀
- 2. 시설물 사용에 대한 안전지도 : 교육주관 - 사무처 총무팀

제 3 절 시설물 사용에 대한 관리

제24조(시설사용 승인 절차) 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6/13	관리 부서	사무처

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일별 공간별로 작성하여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사무처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외부기관(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사용준수사항)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3. 청결유지 및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4. 화재 및 도난예방
5. 인화물 및 폭발위험이 있는 물품의 제거 및 반입금지
6. 출입의 관리 등에 있어 담당자의 통제요구와 지시에 순응
7. 기타 우리 대학에서 지시하는 사항
8. 행사진행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사용 중 상주하여야 하며, 위1~7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행사진행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자동으로 행사진행책임자가 됨)

제26조(사용제한)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의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된다 고 인지될 경우 또는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7조(변상 및 징계조치) 이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상 주의 의무를 대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비롯하여 책임관계에 있는 자에게 변상조치 또는 심사하여 징계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7/13	관리 부서	사무처

부 칙

1. (시행일) 교명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8/13	관리 부서	사무처

[별표 1]

실별 정,부 관리책임자

구분	시설물명	관리책임자		시설물 위치	비고
		정	부		
강 의 실	강의실1	사무처장	총무팀장	제1강의관 1층 101호	
	강의실2			제1강의관 1층 102호	
	강의실3			제1강의관 2층 201호	
	강의실4			제1강의관 2층 202호	
	강의실5			제1강의관 3층 301호	
	강의실6			제1강의관 3층 302호	
	강의실7			제1강의관 4층 401호	
	강의실8			제1강의관 4층 402호	
	강의실9			제1강의관 4층 403호	
	강의실10			제1강의관 4층 404호	
	강의실11			제1강의관 5층 501호	
	강의실12			제1강의관 5층 502호	
	강의실13			제2강의관 1층 101호	
	강의실14			제2강의관 2층 201호	
	강의실15			제2강의관 2층 202호	
	강의실16			제2강의관 3층 301호	
	강의실17			제2강의관 3층 302호	
	강의실18			제2강의관 4층 402호	
	강의실19			제3강의관 지하1층 101호	
	강의실20			간호실습관 3층 301호	

	<h2 style="margin: 0;">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9/13	관리 부서	사무처

구분	시설물명	관리책임자		시설물 위치	비고
		정	부		
교수실	교수실 1	담당교수	총무팀장	본관 2층 204호	
	교수실 2			본관 2층 205호	
	교수실 3			본관 2층 206호	
	교수실 4			본관 2층 207호	
	교수실 5			본관 2층 208호	
	교수실 6			본관 3층 301호	
	교수실 7			본관 3층 302호	
	교수실 8			본관 3층 304호	
	교수실 9			본관 3층 305호	
	교수실 10			본관 3층 306호	
	교수실 11			본관 3층 307호	
	교수실 12			본관 3층 309호	
	교수실 13			본관 4층 402호	
	교수실 14			본관 4층 403호	
	교수실 15			본관 4층 404호	
	교수실 16			본관 4층 405호	
	교수실 17			본관 4층 406호	
	교수실 18			본관 4층 407호	
	교수실 19			본관 4층 408호	
	교수실 20			본관 4층 409호	
	교수실 21			본관 4층 410호	
	교수실 22			본관 4층 411호	
	교수실 23			본관 4층 412호	
	교수실 24			본관 4층 413호	
	교수실 25			간호실습관 5층 501호	
	교수실 26			간호실습관 5층 502호	
	교수실 27			간호실습관 5층 503호	
	교수실 28			간호실습관 5층 504호	
	교수실 29			간호실습관 5층 505호	
	교수실 30			간호실습관 5층 506호	
	교수실 31			간호실습관 5층 507호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10/13	관리 부서	사무처

구분	시설물명	관리책임자		시설물 위치	비고
		정	부		
기본 시설	세미나실 1	사무처장	총무팀장	제1강의관 4층 405호	
	세미나실 2			제1강의관 4층 406호	
	세미나실 1			글도담관 2층 201호	
	세미나실 2			글도담관 2층 202호	
	세미나실 3			글도담관 4층 401호	
	회의실			본관 2층 209호	
				본관 3층 303호	
	행정실			본관 1층	종합행정실 (교무처, 국제교 류센터, 학생처 산학협력처·단, 전산팀)
				본관 1층	사무처
				본관 1층	사무처장실
				본관 2층 203호	총장실
				본관 2층 202호	부속실
				본관 4층 401호	조교실
				글도담관 1층	사서실
				제1강의관 1층	외래강사실
				제1강의관 2층	기획처
				제2강의관 1층	평생교육원
				제2강의관 2층 203호	총동문회실
				제2강의관 3층 303호	교수학습연구 지원센터
				제2강의관 3층 304호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11/13	관리 부서	사무처

구분	시설물명	관리책임자		시설물 위치	비고
		정	부		
기본 시설 및 지원 시설	복지 및 지원시설	사무처장	총무팀장	본관 3층 308호	학생생활상담소
				제1강의관 지하1층	카페테리아
				제1강의관 1층	넷마루
				제1강의관 3층	가온누리
				제1강의관 3층 303호	총학생회
				제1강의관 3층 302호	학보사
				제1강의관 3층 305호	방송국
				제1강의관 3층	Job Cafe
				제2강의관 지하1층	체력단련실
				제2강의관 2층 204호	교직원휴게실
				제2강의관 4층 401호	E-Learning
				제2강의관 5층	Space 잡담
				제3강의관 지하1층	나이팅게일홀
				제3강의관 지하2층	대강당
				제3강의관 지하3층	동아리실
				간호실습관 1층 101호	지역간호사업소
				간호실습관 1층 102호	소강당
				간호실습관 4층	열람실
글도담관	도서관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12/13	관리 부서	사무처

※ 관리책임자 지정 팻말

<h3>관리책임자</h3>	
정	○ ○ ○ ☎ 000-0000-0000
부	○ ○ ○ ☎ 000-0000-0000

	<h2>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h2>	문서번호	3-1-15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0. 12. 31.		
		페이지	13/13	관리 부서	사무처

[별지 제1호 서식]

학교 시설사용신청서						
합 의	담당	팀장	사무처장	결 재	팀/부서장	처장
시설사용 신청내용	사용 일(요일)	사용 시간	소요 시간	장 소	참석인원	
		~	시간 분			
		~	시간 분			
		~	시간 분			
행사명						
행사내용						
요청사항						
관리 책임자	부서/기관		성 명	연락처(전화번호)		
	학 생					
	직 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내 음식을 취식이나 흡연은 일체금지 •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쓰레기 반드시 처리) • 사용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도 제한 (시설 사용시간 동안 관리책임자 교내상주) •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괴시 신청자(기관)가 보상책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행사와 중복될 경우 학교행사 우선 • 음향시설(마이크프함)이나 기자재 및 냉난방 사용은 요청사항에 기재 • 제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차후 사용신청시 사용불가 					
<p>위와 같이 학교 시설사용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신청자	부 서	직 위	성 명	서 명(인)	연락처 (전화번호)	